

제2908호
2022. 3. 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자치법규

[조 례]

- 제16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 2
- 제1639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제164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6
- 제164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규 칙]

- 제75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 26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집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내 자원순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자원순환교육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의 주민·학교·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원순환교육시설의 운영) ① 자원순환교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자원순환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순환, 환경 교육 운영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업무 및 기능) 자원순환교육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저감 및 순환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2. 자원순환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체험활동·전시·공연
3.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지역의 주민, 학교, 법인·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환경의 보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자원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함으로써 현실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함(제1조 ~ 제3조)
-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제8조)
-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 제10조)
- 자원순환교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 제13조)
- 자원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 ~ 제2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39호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에게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마일리지 부여기준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평생직업교육, 시민교육, 문자해독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중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전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 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산하에 권역 실무협의회와 동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 있다.
- ③ 실무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관할 구역 내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권역별·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직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

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결정과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20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등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생학습센터 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절차 등) ①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2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수료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 및 평생교육 현장 여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 책무 강화(안 제3조)
- 평생교육 통계조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안 제4조, 제4조의 2)
- 평생교육 수료자 등에 대한 포상 범위 확대(안 제2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다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

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41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음주청정 지역”이란”을 ““금주구역”이란”으로 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주청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 47조”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음주청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음주청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

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절주교육 및 홍보)”를“(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절주교육”을 “절주 및 금주교육”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신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 ----- -----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 ----- ----- ----- ----- ----- - 금주구역-----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현 행	개 정 안
<p>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p> <p>4. (생 략)</p> <p>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p> <p>6. (생 략)</p> <p><신 설></p> <p>② 구청장은 읍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읍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p>	<p>3. 「주택법」 제2조제14호----- ----- -----</p> <p>4. (현행과 같음)</p> <p>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p> <p>6.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 금주구역----- ----- -----.</p> <p>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읍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p> <p>⑤ ----- 금주구역----- ----- -----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신 설></p> <p>제12조 (생 략)</p>	<p>제6조(교육 및 홍보) ① ----- ----- 절주 및 금주교육--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주”, “금주구역”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규정함(제4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 정비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 해당 자치법규에 기재된 청구기관, 청구대상문서, 청구인, 업무처리방식,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없어진 관계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서울시 자치구중 17개 자치구는 이미 해당 자치법규 폐지 완료

2. 주요내용

- 해당 규칙 폐지